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 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나.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
- 3) 사무내용
 -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
 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
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나.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모 : 건물 2,043.58m²

다. 추경개요

- 1) 추경예산 : 240,0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14,841,714천원 (기정 출연금액 14,601,714천원)

- 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디지털 채널 활성화 : 100,000천원
- 시민공연 확대(미라클 서울) : 140,000천원

- 2) 추경 필요성

- 디지털 채널 활성화
 - 2022년 상반기 재단 유튜브 채널 개편에 따른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한 채널 활성화로 정기공연과 사회공헌사업의 홍보마케팅 판로개척, 후원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출연 필요
- 시민공연 확대(미라클 서울)
 - 서울명소 배경으로 고품격 문화콘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대상 서울 명소를 적극 홍보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시민 다수가 안전하게 클래식 음악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위해 추가 출연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